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0
----------	------

2023년 12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3일, 박성연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현재는 품질검사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품질검사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그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시험소장이 책임지지 않으며, 그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품질시험소”)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해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토록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생략) ② <u>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u>

■ 품질시험소 품질검사 추진 현황

-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7조¹⁾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

본 조례 제3조2)에 근거하여 의뢰자가 시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13조가 정한 수수료³⁾를 받고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의뢰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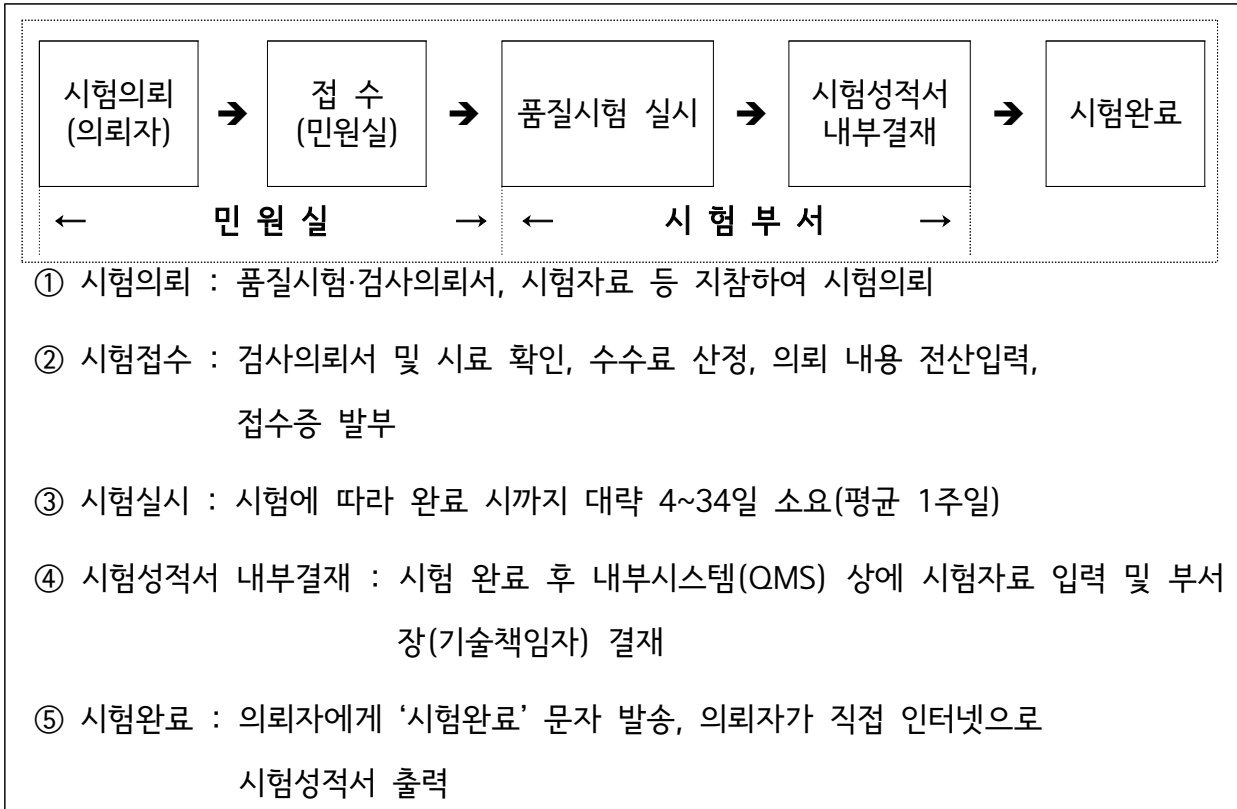
[표] 최근 5년간 품질시험소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신청 건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
의뢰 건수	2,502	2,555	2,645	2,702	3,003
접수 건수	2,502	2,555	2,645	2,702	3,003
처리 건수	2,502	2,555	2,645	2,702	3,003
접수거부 건수	-	-	-	-	-
시료반환 요청건수	-	-	-	-	-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 8. (생 략)
- 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표] 품질검사 시험의뢰 접수 및 처리 절차



■ 개정안 검토

-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의뢰자가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반환토록 하는 한편, 시험으로 인한 반환 시료의 손상에 대한 시험소장의 면책사항과 반환비용 부담주체를 의뢰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이는 의뢰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⁴⁾를

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생략)

②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2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2호)

지급하고 품질검사를 의뢰했던 시료에 대해 의뢰자의 필요에 따라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반환토록 하려는 것으로,

- 품질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품질검사 과정에서 변형·변질·손상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품질검사 의뢰 당시의 원래 성상을 잃게 되며,

의뢰자는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상태에서 의뢰하는 것이기에 시험소장은 현행규정에 따라 원래 성상을 잃어버린 시험후 시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고 자체 폐기하여 왔으나 간혹 의뢰자가 시험후 시료상태를 확인 또는 추가적인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됨.

- 다만, 품질시험소가 매년 수천 건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반환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험 후 시료를 보관할 수는 없는바,
-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란을 추가하여 반환요청이 있는 시료에 대해서만 KOLAS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정한 7일간의 보관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고)

5) 「KOLAS 품질경영시스템」 시험 품목의 취급 절차서 4p (문서번호:SQIO-QP-11)

5.2.2.4. 반환시료는 시험성적서 발급 시 고객에게 인계하고, 폐기시료는 5.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 통보 후 7일 이후에 폐기 처리한다.

[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정의견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종목	(*)		
시 료 명			
시 료 량	(채취일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채취 입회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이하 생략)...			

- 참고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특성상 검사 후 대부분의 시료가 손상되어 건설자재로서의 원래의 형상과 성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반환요청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시험 후 시료의 반환 여부와 보관 일수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0
----------	------------

제 안 일 자 : 2023년 12월 19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시험 후 시료의 반환 여부와 보관 일수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품질검사 의뢰서」에 시료의 반환 요청 여부 항목을 추가하면서 반환 비용의 주체와 보관 일수 등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종목	(*)		
시 료 명			
시 료 량	(채취일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채취 입회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절 취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생략)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생략)... <table><tr><td>국가중요 시설 여부</td><td>(공란)</td></tr></table>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이하 생략)...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품질검사 의뢰서 ...(현행과 같음)... <table><tr><td>국가중요 시설 여부</td><td>(공란)</td></tr></table> <신설>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현행과 같음)...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품질검사 의뢰서 ...(개정안과 같음)... <table><tr><td>국가중요 시설 여부</td><td>(공란)</td></tr></table>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 부담, 시험결과 통보 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개정안과 같음)...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국가중요 시설 여부	(공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종목	(*)		
시 료 명			
시 료 량	(채취일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채취 입회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절 취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생략)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생략)... <table><tr><td>국가중요시설 여부</td><td>(공란)</td></tr></table> <신설>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이하 생략)...	국가중요시설 여부	(공란)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현행과 같음)... <table><tr><td>국가중요시설 여부</td><td>(공란)</td></tr></table><table><tr><td>시험후 시료 반환여부</td><td>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td></tr></table>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현행과 같음)...	국가중요시설 여부	(공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국가중요시설 여부	(공란)						
국가중요시설 여부	(공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